

선 람	기 관 의 장

포항시보

◀ 입 법 예 고 ▶

○포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(제2015-135호) 2

◀ 고 시 ▶

○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(변경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(제2015-118호) 8

◀ 공 고 ▶

○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(제2015-1321호) 14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입 법 예 고

포항시 공고 제2015 -135호

포항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. 10. 27
포 항 시 장

포항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「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~제5조)
-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지킴이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분담(안 제8조, 제9조)
-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주체 표창 및 준용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, 제11조)

3. 관계 법령

-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, 제2조의2
-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5. 11.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(참조 : 안전관리과장 : 포항시 남구 시청로 1, 전화 270-3342~3, FAX 270-3340, E-mail : geehong@korea.kr)에게 서면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- 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

5. 기 타

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(www.@ipohang.org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포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포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놀이기구”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.
2. “어린이놀이시설(이하 “놀이시설”이라 한다)”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3. “관리주체”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,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포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유지관리 및 지원계획)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당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야

한다. 단,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
2. 시설물의 검사일, 안전교육이수일,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·안전교육·보험가입 예정일 표기
3.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4.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
5.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
6.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
7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

제5조(안전관리 의무이행 등)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, 정기시설검사, 안전교육 이수, 보험가입,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)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.

제7조(안전감시망 구축)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“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”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 「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업무의 분담)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「포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·조정 역할을 한다.

제9조(표창 등)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·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「포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포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

4. 작성자 :

고 시

포항시 고시 제2015 - 118호

**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(변경) 고시 및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**

포항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(변경)하고,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5. 10 . 29.

포 항 시 장

1. 실시계획 작성(변경)

1) 사업시행지 :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, 흥해읍 곡강리 일원

2)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
- 명 칭 : 대로 2-4호선, 대로 2-4산4호선.

3) 사업규모

- 연장 : L = 1.57km
- 폭원 : B = 15.0 ~ 30.0m

4)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
- 주 소 :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
- 성 명 : 포항시장

5) 사업의 기간(변경)

- 기 정 : 2013. 5. 15. ~ 2015. 12. 31
- 변 경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16. 12. 31

6) 실시계획 작성(변경) 사유

- 실시계획인가 구역 변경(토지분할 등의 면적오차정정 및 일부노선 변경)
- 실시계획인가 기간 변경

7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, 권리자의 성명 주소

일련번호	소재지		지목	면적 (㎡)	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			비고
	리동	지번		공부상	편입	주소	성명	종류	주소	성명	
1	양덕	385-2	도	2	2	포항시 북구 죽도동 22-28	박청수	기입류	포항시 북구 신흥동 810-9	포항죽도시상가신흥동조합	
2	양덕	385-1	대	17	17		포항시				
3	양덕	368-5	답	6	6		포항시				
4	양덕	369-4	답	158	158		포항시				
5	양덕	1154-13	구	73	73		국(기획재정부)				
6	양덕	368-4	답	171	171		포항시				
7	양덕	385-3	전	42	42		포항시				
8	양덕	384-2	대	33	33		포항시				
9	양덕	384-4	임	239	239		포항시				
10	양덕	384-14	임	302	302		포항시				
11	양덕	384-13	임	267	267	포항시 남구 효성로 88, 301동 1504호	홍승연	근저당	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길 20	안강농업협동조합	
12	양덕	362-4	대	39	39		포항시				
13	양덕	368-9	답	287	287		포항시				
14	양덕	368-8	답	528	528		포항시				
15	양덕	366-4	답	364	364		포항시				
16	양덕	366-3	답	1,018	1,018		포항시				
17	양덕	365-1	답	87	87		포항시				
18	양덕	1154-12	구	134	134		국(기획재정부)				
19	양덕	1150-14	도	128	128		국(국토교통부)				
20	양덕	1150-16	잡	77	77		국(국토교통부)				
21	양덕	339-2	답	439	439		포항시				
22	양덕	340-1	답	42	42		포항시				
23	양덕	산60-6	임	807	807		포항시				
24	양덕	337-4	전	290	290		포항시				
25	양덕	337-3	전	26	26	포항시 북구 학전로 103, 101동 805호	박해자				
26	양덕	산60-7	임	89	89		포항시				
27	양덕	산61-7	임	971	971		포항시				

일련 번호	소재지		지 목	면적 (㎡)	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			비 고
	리동	지번		공부상	편입	주소	성명	종류	주소	성명	
28	양덕	산61-6	임	1,902	1,902	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60-5 반포미도 2차아파트 501-906	김윤태 외7				
29	양덕	산62-13	임	1,315	1,315		포항시				
30	양덕	산62-12	임	294	294		포항시				
31	양덕	산62-14	임	209	209		포항시				
32	양덕	산62-15	임	164	164		포항시				
33	양덕	산62-16	임	36	36		포항시				
34	양덕	331	유	105	105		국(기획재 정부)				
35	양덕	330	답	76	76		포항시				
36	양덕	1154-11	구	379	379		국(농림축 산식품부)				
37	양덕	산62-17	임	98	98		포항시				
38	양덕	329	유	262	262		포항시				
39	양덕	1155-1	도	176	176		포항시				
40	양덕	328-4	답	516	516		포항시				
41	양덕	327	답	1,152	157	포항시 북구 양덕동 321	배두원				
42	양덕	327-3	답	460	460		포항시				
43	양덕	325-1	답	678	678		포항시				
44	양덕	319-1	전	1,371	1,371		포항시				
45	양덕	317-2	답	1,051	1,051		포항시				
46	양덕	317-1	답	305	305	포항시 남구 해도동 497-30	신필순				
47	양덕	316-2	답	573	573		포항시				
48	양덕	316	답	363	246	포항시 북구 양덕동 321	배도원				
49	양덕	315	전	96	96	포항시 북구 양덕동 321	배두원				
50	양덕	315-1	전	717	717		포항시				
51	양덕	산264	구	39	39		국(농림축 산식품부)				
52	양덕	산66-6	임	743	743		포항시				
53	양덕	328-2	답	8	8		포항시				
54	양덕	326	답	102	102		포항시				
55	양덕	산68-1	임	328	328		포항시				

일련번호	소재지		지목	면적 (㎡)	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			비고
	리동	지번		공부상	편입	주소	성명	종류	주소	성명	
56	양덕	318-1	전	281	281	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1블럭 1롯트 대림한솔타운 101-1304	신태윤				
57	양덕	318-2	전	67	67		포항시				
58	양덕	1153	구	973	973		국(농림축 산식품부)				
59	양덕	산67-1	임	267	267		포항시				
60	양덕	314	전	387	387		포항시				
61	양덕	313	전	651	651		포항시				
62	양덕	313-1	전	767	767		포항시				
63	양덕	산66-5	임	1,541	1,541	대구 북구 태전동 997 현대아파트 102-804	박성호 외1				
64	양덕	산66-8	임	5,796	5,796		포항시				
65	양덕	산66-7	임	351	351		포항시				
1	곡강	산32-75	임	5,417	5,417		포항시				
2	곡강	산32-76	임	1,626	1,626		포항시				
3	곡강	산32-71	임	27	27		포항시				
4	곡강	1021	답	456	456		포항시				
5	곡강	1021-2	답	1,583	1,583		포항시				
6	곡강	산32-67	임	7,680	7,680		포항시				
7	곡강	산32-26	임	7,438	202	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520, 104-1003	장현주 외2				
8	곡강	산32-68	임	1,136	1,136		포항시				
9	곡강	산32-72	임	165	165	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11	최광수 외1				
10	곡강	1027-3	전	689	689		포항시				
11	곡강	1028	대	380	380		포항시				
12	곡강	산33-7	임	1,231	1,231		포항시				
13	곡강	산33-5	임	1,684	1,684		포항시				
14											
15	곡강	산32-83	임	108	108		포항시				
16	곡강	산32-57	임	1,279	1,279		포항시				

일련 번호	소재지		지 목	면적 (㎡)	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			비 고
	리동	지번		공부상	편입	주소	성명	종류	주소	성명	
17	곡강	산32-82	임	856	856	경주시 동성로 116-1	오잠순 외1				
18	곡강	산32-65	유	312	312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 촌공사				
19	곡강	1036-11	유	357	357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 촌공사				
20	곡강	1036-5	전	1,028	1,028		포항시				
21	곡강	1036-10	구	552	552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 촌공사				
22	곡강	산32-79	임	164	164		포항시				
23	곡강	산37-3	임	5,501	5,501		포항시				
24	곡강	1020-1	답	321	321		포항시				
25	곡강	산32-66	임	339	339		포항시				
26	곡강	산32-61	임	1,400	1,400		포항시				
27	곡강	산31-6	임	62	62		포항시				
28	곡강	산32-86	임	23	23		포항시				
29	곡강	산32-73	임	1,714	1,714	포항시 북구 양락로 70-30, 101-2005	김상대	근저당 자상	포항시 북구 특랑동 146-2	신평향새 마을금고	
30	곡강	산32-81	임	796	796	포항시 북구 양락로 70-30, 101-2005	김상수				
31	곡강	산32-55	임	2,812	2,812		포항시				
32	곡강	산32-63	유	1,587	1,587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 촌공사				
33	곡강	산32-64	유	12	12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 촌공사				
34	곡강	산31-8	임	260	260		포항시				
35	곡강	산32-74	임	1,339	1,339		포항시				
36	곡강	산32-59	임	3,155	3,155		포항시				
37	곡강	산31-7	임	15	15		포항시				
38	곡강	산31-9	임	219	219		포항시				
합 계				85,922	77,032						
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)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
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·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
- 또한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·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.

2)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2	4산4	30	주간선 도로	823	양덕동 313-1전	영일만4 산단구역계 곡강리 산37입	일반 도로	-	포항시 고시 제2011-82호 (2011.10.11)	
변경	대로	2	4산4	30	주간선 도로	824	양덕동 313-1전	영일만4 산단구역계 곡강리 산37입	일반 도로	-		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대로2-4산4	대로2-4산4	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연장증가 B=30m, L=823m → 824m (증)1m	· 대로2-4산4호선 일부구간 선형변경에 따른 연장증가

3.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등 : 도면 실음 생략(비치도서와 같음)

4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ct.go.kr>)에서 열람 가능하며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(도시계획과 054-270-3815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 끝.

공 고

포항시 공고 제2015 - 1321호

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

포항 도시계획시설(중로3류162호선)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.

2015 . 10. 30.

포 항 시 장

- 1. 사업시행지 : 포항시 북구 용흥동 264-6번지 일원
 - 2. 준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
 - 명 칭 : 중로3류162류호선
 - 3. 사업의 규모 : 길이=37m, 폭=12m, 면적=553㎡
 - 4. 사업시행자 : 대한토지신탁(주) 대표 박성표
 - 5. 사업 시행기간 : 2015.9.3 ~ 2015.10.21.
- ※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[270-3475]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